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31,890,448	15,956,713
일반회계	455,703,634	13,671,109
특별회계	76,186,814	2,285,604
공기업특별회계	62,755,218	1,882,657
공영개발특별회계	16,076,145	482,28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323,813	579,71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7,355,260	820,658
기타특별회계	13,431,596	402,948
의료급여특별회계	366,312	10,989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05,995	6,180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3,547,546	106,426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2,482,770	74,483
주차장운영특별회계	1,582,219	47,467
수질개선특별회계	4,763,054	142,892
기반시설특별회계	322	1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01,000	3,03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382,378	11,47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852,131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9,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재원구분) 의존재원에 대한 약어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국고보조금(국), 지역발전특별회계(지), 기금(기), 도비보조금(도), 특별교부세사업(특), 시군조정교부금등(조)